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8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0. 03. 06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주택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 
에 대해 조문의 해석이 분명하도록 수정하고,
- 소득, 자산, 차량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과 관리에 관  
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,
-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  
원은 현행대로 유지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주택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노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  
도록 ‘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’으로 보도록 수정함(안 제5  
조제5항).
-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‘소득·자산·  
차량소유 여부 등’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  
17조제2항)
-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  
른 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함  
(안 제20조제2항제11호).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단서 중 “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.”로 한다.

안 제17조제2항 본문 중 “그 밖에”를 “소득·자산·차량소유 여부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 중 “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의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.”를 “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의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20조제2항제2호 중 “도시계획·건축·교통·환경·재해·에너지·경관·교육환경”을 “도시계획·건축·교통·환경·재해·에너지·경관”으로 하며,

안 제20조제2항제11호는 현행과 같이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사업대상지)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<u>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하이며,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7조(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, 신혼부부(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), <u>사회초년생</u> 등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사업대상지)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<u>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7조(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, 신혼부부(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), <u>청년</u> 등으로 한다. 다만,</p>	<p>제5조(사업대상지)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<u>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제17조(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, 신혼부부(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), <u>청년</u> 등으로 한다. 다만,</p>



<p>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</p>		
<p>6. (생략)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7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 라 해당 주택지구내 속 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 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 천하는 사람 2명 이상</p>	<p>&lt;삭제&gt;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8. ~ 10. (생략)</p>	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	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11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 ·도교육환경보호위원 회의 위원 중 해당 위 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2명 이상</p>	<p>&lt;삭제&gt;</p>	<p>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~ ⑥ (생략)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단서 중 “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하이며,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.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사회초년생”을 “청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한정한다”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그 밖에”를 “소득·자산·차량소유 여부 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에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의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.”

제20조제2항제2호 중 “도시계획·건축·교통·환경·재해”를 “도시

계획·건축·교통·환경·재해·에너지·경관”으로 하고, “사람 3명 이상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제5호와 제7호는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수정안
제5조(사업대상지)	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하이며,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5조(사업대상지)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대상지내 기존 건축물이 <u>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.</u>
제17조(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	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, 신혼부부(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), <u>사회초년생</u> 등으로 한다. 다만,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<u>한정한다.</u>	제17조(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, 신혼부부(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), <u>청년</u> 등으로 한다. 다만,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<u>할 수 있다.</u>
	② <u>그 밖에</u>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② <u>소득·자산·차량소유 여부 등</u>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		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